

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01. 9. 1. 전문개정 2013. 3. 1.

개정 2013. 7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소의 기능) 기존의 학과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, 본 대학의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.

제3조(연구소의 설치요건) ① 연구소로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, 인력, 운영비,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존 연구소의 연구위원 또는 운영위원은 다른 연구소의 연구위원 또는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4조(주관학과와의 협의) 연구소장은 시설, 공간의 사용, 연구소 업무 중 학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학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설치근거 및 절차) ① 연구소는 학칙 제 94 조에 의하여 설치한다. <개정 2013.7.1.>

② 연구소는 해당학과의 심사와 관련부서의 검토, 총장의 결재를 거쳐 설치한다.

제6조(규정제정 및 개정절차)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정류의 관리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의2(운영위원회) ① 각 연구소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<신설 2013.7.1.>

1.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사업 방향의 설정 및 검토
3. 회계 및 사업계획 평가
4. 기타 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

제7조(평가) ① 총장은 연구소의 기능, 시설, 연구비, 연구활동, 연구영역, 재원조달 및 자립능력 등 운영상태를 매 2년마다 평가한다.

② 평가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, 각 항목별 등급은 점수는 “C” 이상을 급제로 한다.

등급	배 점
A	100 - 90
B	90 - 75
C	75 이하

③ 연구소 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제8조(통합 또는 폐지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② (연구소의 평가 및 존폐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평가를 거쳐 학칙에 등재된 연구소 중 최저등급(“C”등급)을 받은 연구소는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구소의 소장은 1개월 이내에 잔여업무를 해당학과장에 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기준, 절차 및 방법) 연구소의 설치, 평가, 통·폐합에 적용할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